

목 차



제1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00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규정집 2026

제1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8.	1.	1.
개정	2009.	2.	1.
개정	2010.	2.	1.
개정	2011.	2.	1.
개정	2012.	1.	1.
개정	2013.	1.	1.
개정	2016.	12.	12.
개정	2017.	3.	24.
개정	2018.	7.	3.
개정	2019.	4.	5.
개정	2019.	10.	4.
개정	2020.	3.	9.
개정	2021.	1.	11.
개정	2021.	2.	9.
개정	2022.	1.	21.
개정	2022.	2.	25.
개정	2023.	1.	3.
개정	2023.	7.	25.
개정	2024.	1.	23.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11.	1.
개정	2025.	2.	10.
개정	2026.	0.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직업) 및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및 고용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상담"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초기면접부터 종결까지의 제반 상담 활동을 말한다.
2. "직업능력평가"란 구직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파악·분석하여 개별 재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능력·의료·심리·작업표본·현장평가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직업적응훈련”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개인·사회적응, 직업준비·수행,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에 대한 적응훈련을 말한다.
4. “현장중심 직업훈련”이란 구직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준비·수행,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에 대한 직업훈련을 말한다.
5. “취업알선”이란 장애인의 흥미와 특성, 직업적 욕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업을 연결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취업 후 적응지원”이란 장애인, 사업주, 가족, 감독자, 동료 등을 대상으로 취업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이 통합된 작업장에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훈련 및 계속적 지원 등의 고용 서비스를 말한다.
8. “사업수행기관”이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복지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특화사업 지원기관”이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이 매년 공모·선정하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말한다.
10. “전문인력”이란 사업수행기관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보고되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을 말한다.
11. “훈련지원인”이란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생의 훈련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12. “청렴 의무”란 제8호의 사업 수행기관이 공공기관에 준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준수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총괄수행기관) 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총괄 수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2. 사업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3. 사업수행기관 평가·교육, 사업운영점검

4. 사업실적 및 통계관리
5.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6.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및 사업관련 업무

제2장 직업상담 및 평가

제4조(구직등록) 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사업수행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장애인이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종료일부부터 기산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직장애인에게 구직의사를 확인하여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직업상담)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및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직업능력평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및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개별재활계획 수립 등)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당해 구직장애인이 직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재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적합한 서비스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구직장애인이 직업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안내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8조(종결처리)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종결할 수 있다.

1. 구직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2. 구직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3. 구직장애인을 타 기관으로 이관 및 서비스 의뢰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가 완결되었거나, 직업재활서비스가 계속되기 어려운 경우

제9조(구인등록) ① 장애인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정보기록지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구직자 소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인사업주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인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인사업주에 대하여 구인의사를 확인하여 구인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직업적응훈련

제10조(직업적응훈련 대상자) ① 직업적응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원고용, 일반고용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 등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동 법령 및 타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3. 이 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과 현장중심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일기관 및 타기관 포함)을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한 사람
 4.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자의 경우는 참여 가능

제11조(직업적응훈련 훈련과정) ① 직업적응훈련 과정은 장애인이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표준형 직업적응훈련(이하 '표준형'이라 한다).
 2. 구직탐색형 직업적응훈련(이하 '구직탐색형'이라 한다).
 3. 전환교육형 직업적응훈련(이하 '전환교육형'이라 한다).
- ② 표준형은 필수 운영 유형으로 하며, 구직탐색형 및 전환교육형은 수행기관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은 하나의 훈련유형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형 간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③ 훈련기간은 직업적응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 ④ 훈련시간은 훈련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표준형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80시간 이상 실시한다.
 2. 구직탐색형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실시한다.
 3. 전환교육형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2조(훈련인원) ① 직업적응훈련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며, 유형별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훈련 수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원의 20% 범위에서 훈련생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표준형은 최소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2. 구직탐색형은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3. 전환교육형은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 ② 개발원장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소 훈련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개발원장은 회계연도 내 최소 훈련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직업적응훈련수당지원) ① 개발원장은 직업적응훈련생에게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직업적응훈련기관은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신청서를 매 월 훈련실시 후 10일 이내에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원은 이를 검토 후 결정사유가 없을 시 매월 20일 이내에 훈련생 개인계좌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기능경기대회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일수에 포함한다.

제4장 현장중심 직업훈련

제14조(현장중심 직업훈련 대상자) ① 현장중심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원고용, 일반고용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정에 따라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동 법령 및 타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3. 이 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과 현장중심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일기관 및 타기관 포함)을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한 사람
4.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는 참여 가능

제15조(훈련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① 사업체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 ②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은 훈련이 실시될 사업체의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 한 뒤 훈련생 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훈련사업체 개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과정) ①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사업체 내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과 직업환경에 적응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집합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시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표준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이하 '표준형'이라 한다).
2. 단축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이하 '단축형'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훈련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훈련기간은 직업적응훈련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훈련시간 및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훈련배치) ① 수행기관의 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와 직무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훈련생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체에 훈련생이 배치된 경우 현장중심 직업훈련 사업체에 훈련지원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훈련생 및 훈련지원인 배치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수당지원)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중심 직업훈련생에게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1개월)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현장중심 직업훈련 수행기관은 월간수당 지급내역을 매월 훈련실시 후 익월 10일 이내에 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월 15일 이내에 훈련생 개인계좌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개발원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기능경기대회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출석인정 범위에 따라 훈련일수에 포함한다.

제5장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제19조(사업체 개발)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장 방문, 각종 구인정보지 및 구인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취업알선 대상 사업체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알선)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장애인인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용동향, 취업유망직종 등 노동시장의 고용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취업 후 적응지원)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취업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후 적응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유지를 위해 취업 후 장애유형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120일 동안 정기적 방문지도를 포함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적응지원을 실시할 경우 취업자의 직무 및 작업환경의 적응여부를 확인하고 직장적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취업장려금의 지급) ① 개발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취업알선으로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기관에 취업장려금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업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취업한 중증장애인의 계속 근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6개월 이내에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원장은 이를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공문확인 마감일(매월 2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사업관리 및 지원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복지관
2.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재단 법인에 한함)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특화사업 지원기관의 선정은 개발원장이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 및 특화사업 지원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의2(위원의 구성) 개발원은 사업수행기관 및 특화사업 지원기관 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2.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3. 위원은 직업재활 관련 대학교수 및 10년 이상 직업재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화사업 지원기관 선정의 경우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한 관련학과 교수 및 현장전문가를 우선으로 구성한다.
4. 민간위원의 경우 본조 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 후보군(Pool)을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위원 후보군(Pool)에서 3배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개발원은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이력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심사·평가·의결에서 제척한다.

1. 대상 기관 및 사업의 이해당사자의 경우
 2. 대상 기관 및 사업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심의·심사·평가·의결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회 구성 후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즉시 제척한다.
-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화상회의를 포함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리 출석을 허용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개발원은 회의 개최 최소 2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구두통보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5(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최종결과 및 사유에 관한 내용을 결과확인서에 작성하며, 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과확인서는 14일 이내에 최종 결과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영업비밀 및 부적격 사유 등 기관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중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제28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이행약정서에 위배되는 경우
4. 제3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사업수행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발원장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기관 지원 중단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중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이 중단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7조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2년
2. 제28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이행약정서에 위배되는 경우 2년
3. 제3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제25조(상해보험) 개발원장은 직업적응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생이 훈련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개발원장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 등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실적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인·구직정보와 직업상담 및 평가,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현장중심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실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역할) ①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시 장애당사자 및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제출한 전체 직업재활사업 인력을 축소하지 않도록 하며, 전문인력을 직업재활 사업과 무관한 업무에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전문적이고 일관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과 훈련지원인 교육기회 제공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전문인력과 훈련지원인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이행약정'의 사항 및 제2조제12호에 따른 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연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실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개발원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 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개발원장과 매년 이행약정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지원) ① 개발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등을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또는 타 법령·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신청시기, 집행방법, 금액 등 세부적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③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산반납금액 발생 시 지급 기준 내에서 다음 년도 지원금을 차감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신청) 제2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지원신청서를 매분기 개시 전월의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개발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지급 등) 개발원장은 제30조에 따라 예산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을 결정·지급하고 그 지급내용을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의 집행)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이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관리하고,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3. 기타 사업관련 제반서류
4. 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철 등 회계 관련 장부
5. 자산관리대장 등

제34조(예산집행실적제출) ① 제31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예산집행실적 보고 및 예산집행내역을 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합된 예산집행실적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시스템에 입력된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장은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에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개발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한 자료의 보안을 위한 제반 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운영점검) ① 개발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운영 관련 서류점검 및 방문점검(필요시)을 통해 지원된 예산의 집행내용, 전문인력 인사 및 복무 관련 내용, 훈련생 관련 내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일시·목적을 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점검 주기는 1년 단위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 할 수 있다.

제36조(사업운영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개발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사업운영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급받거나 예산을 사용한 경우
2.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른 사업운영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7조(예산정산 및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집행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 등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 후 연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수행 불가 등)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업수행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조치, 사업수행기관의 예산 조정 지원 또는 사업수행기관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평가절차 및 기준, 방법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④ 개발원은 사업수행기관의 평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본 규정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를 적용한다.

- 제40조(이의신청)**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지원 중단 등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개발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 중 지원중단 조치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지한다.
- ③ 개발원은 이의신청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본 규정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를 적용한다.

-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발원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개발원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구직 및 기타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목적 및 활용용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목적 및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발원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2조(운영지침)** 개발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사업수행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발원장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직업적응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형 직업적응훈련' 및 '표준형 현장중심 직업훈련'으로 본다.

부 칙 <2009.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